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전문위원 석영표

I. 개요

1. 방화죄의 의의

■ 협의의 방화죄

- 방화죄와 실화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공용건조물·일반건조물 또는 일반물건을 소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위협범죄임

■ 광의의 방화죄

- 협의의 방화죄 이외에 형법은 진화를 방해하거나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거나 가스 등의 공작물을 손괴하는 것도 방화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음 - 준방화죄

2. 방화죄의 보호법익

- 공공의 안전이라는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지만 부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 즉 소유권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공공위협범죄와 재산범죄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가지는 범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

II. 방화범죄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

1. 방화범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가. 형법

적용법조	죄명	법정형
형 § 164①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방화	무기 or 3년 ↑
형 § 164②	(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 치상 : 무기 or 5년 ↑ ○ 치사 : 사형, 무기 or 7년 ↑
형 § 165	(공용, 공익)(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무기 or 3년 ↑
형 § 166①	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2년 ↑
형 § 166②	자기소유(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7년 ↓ or 1,000만 ↓
형 § 167①	일반물건방화	1년~10년
형 § 167②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3년 ↓ or 700만 ↓
형 § 168	방화연소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방화 또는 자기소유일반물건등방화로 인한 현주건조물등, 공용건조물등, 일반건조물등 연소 : 1년~10년 ○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로 인한 일반물건 연소 : 5년 ↓
형 § 169	진화방해	10년 ↓
형 § 170	실화	1,500만 ↓
형 § 171	(업무상, 중)실화	3년 ↓ 금고 or 2,000만 ↓
형 § 172①	폭발성물건파열	1년 ↑
형 § 172②	폭발성물건파열(치상, 치사)	○ 치상 : 무기 or 3년 ↑ ○ 치사 : 무기 or 5년 ↑
형 § 172조의2①	(가스, 전기, 증기, 방사선, 방사성물질)(방출, 유출, 살포)	1년~10년
형 § 172조의2②	(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 치상 : 무기 or 3년 ↑ ○ 치사 : 무기 or 5년 ↑

형 § 173①	(가스, 전기, 증기)(공급, 사용)방해	1년~10년
형 § 173②	공공용(제1항 각 죄명)	1년~10년
형 § 173③	(제1항, 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 치상 : 2년 ↑ ○ 치사 : 무기 or 3년 ↑
형 § 173조의2①	과실(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 제1항, 제173조 제1항, 제2항 각 죄명)	5년 ↓ 금고 or 1,500만 ↓
형 § 173조의2②	(업무상, 중)과실(제1항 각 죄명)	7년 ↓ 금고 or 2,000만 ↓
형 § 174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172조의2 제1항, 제173조 제1항, 제2항 각 죄명)미수	-
형 § 175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172조의2 제1항, 제173조 제1항, 제2항 각 죄명)(예비, 음모)	5년 ↓

나. 문화재보호법

적용법조	죄명	법정형
§ 94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건조물 등 방화	형 § 165 법정형의 1/2가중 = 무기 또는 4년 6월 ~ 45년 ¹⁾

다. 산림 방화 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법조	죄명	법정형
§ 71①	채종림, 수형목, 시험림 방화	7년 ↑
§ 71②	미수범	-

1) 법정형을 1/2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한과 상한을 모두 가중하는 것이 법문에 충실한 해석일 것으로 보임.

▣ 산림보호법

적용법조	죄명	법정형
§ 53①	타인 소유 산림 등 방화	7년 ↑
§ 53②	자기 소유 산림방화	1년 ~ 10년
§ 53③	§ 53②행위로 타인 소유 산림 연소	2년 ~ 10년
§ 53④	산림실화	3년 ↓ or 1,500만원 ↓
§ 53⑤	미수범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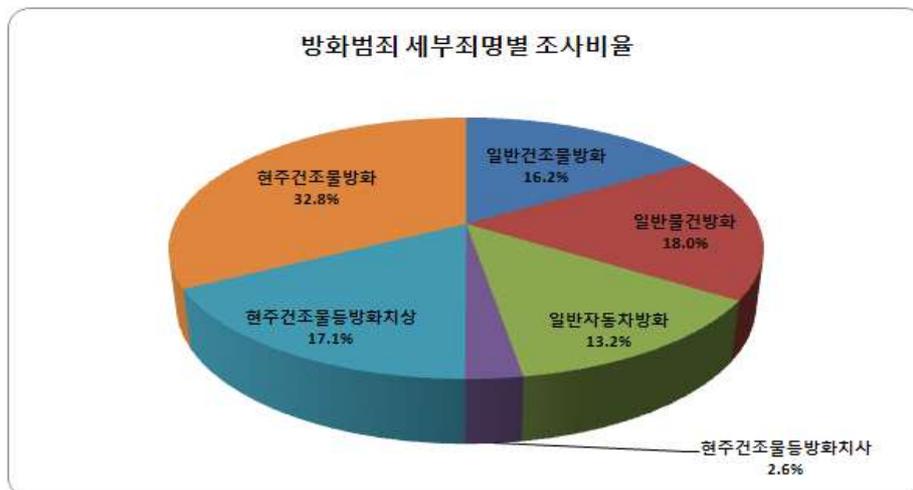
적용법조	죄명	법정형
§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71, 산림보호법 § 53②, ③, ⑤ 위반	무기 or 5년 ↑

2. 통계자료

- 2006. 1. 1.부터 2011. 12. 31.까지 전국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제3기 양형기준 대상사건(동종경합범을 포함한 단일범)에 대한 양형기초자료조사 중 방화범죄로 분류된 피고인 604명의 연도 및 죄명별 빈도수는 다음과 같음

단위 : 명, %

세부죄명		선고연도						전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일반건조물방화	수	13	16	26	15	15	13	98
	비율	13.3	16.3	26.5	15.3	15.3	13.3	100.0
일반물건방화	수	14	17	15	16	26	21	109
	비율	12.8	15.6	13.8	14.7	23.9	19.3	100.0
일반자동차방화	수	8	15	15	20	12	10	80
	비율	10.0	18.8	18.8	25.0	15.0	12.5	100.0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	수	6	5	2	3	0	0	16
	비율	37.5	31.3	12.5	18.8	0.0	0.0	100.0
현주건조물등방화치상	수	20	25	17	18	11	12	103
	비율	19.4	24.3	16.5	17.5	10.7	11.7	100.0
현주건조물방화	수	10	17	24	27	48	72	198
	비율	5.1	8.6	12.1	13.6	24.2	36.4	100.0
전체	수	71	95	99	99	112	128	604
	비율	11.8	15.7	16.4	16.4	18.5	21.2	100.0



3. 양형기준 설정 범위

가. 대상범죄 선정 원칙

- ▣ 국민적 관심 + 범죄의 발생빈도 + 양형기준 설정 적합성
- ▣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높고, 범죄발생 빈도가 높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조세범죄 유형에 한정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거나 발생빈도가 높지 않은 경우, 반사회성과 국민적 관심이 낮은 경우는 대상범죄에서 제외함이 타당

나. 구체적 검토

1) 현주건조물 등 방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 - 포함

- 전체 방화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법정형이 매우 높으며, 실제 범죄 발생빈도도 높음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의 양형기초 자료조사 결과 전체 대상 범죄 중 현주건조물등방화는 32.8%(198건), 현주건조물등방화치상 17.1%(103건),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 2.6%(16건)에 달함
- 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큰 경우가 많고, 사회적 관심도 매우 높은 범죄임
- 양형기준 설정 대상 포함

2) 공용건조물 등 방화 - 포함

- 사건발생빈도는 높지 않으나 범죄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양형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높음
- 양형기준 설정 대상 포함

3) 일반건조물 등 방화 - 포함

- 방화범죄 중 사건발생빈도가 높고, 법정형도 높으며, 범죄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도 높음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의 양형기초자료 조사결과 일반건조물방화가 16.2%(98건), 일반자동차방화가 13.2%(80건)에 달함
- 양형기준 설정 대상 포함

4) 일반물건방화 - 포함

- 사건발생빈도가 높고, 법정형도 비교적 높으며, 범죄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도 높음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의 양형기초자료조사 결과 일반물건방화가 18%(108건)에 달함
- 양형기준 설정 대상 포함

5) 실화죄 - 제외

▣ 단순실화죄

- 법정형에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어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

▣ 업무상실화, 중실화

- 법정형이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낮음 ⇒ 형량범위를 세분화하여 양형기준 설정하기 어려움
- 발생빈도가 아주 적지는 않으나, 대다수가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고, 실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양형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그다지 높지 않음
-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에 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을 제외하고 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교통범죄 중 사건발생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되어 예외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한 것임
-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

6) 문화재 방화(문화재보호법위반) - 포함

▣ 포함하자는 견해

- 최근 ‘송례문 방화’ 등과 같이 문화재방화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고, 방화로 인하여 막대한 문화적·경제적 손실이 초래되며, 그 손해 또한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함

▣ 제외하자는 견해

- 2006년 이후 실제 선고사례가 3건에 불과할 정도로 사건 발생빈도가 매우 낮아 개별적 사안에서 양형을 정하면 충분하고 양형기준으로 정할 필요까지 없음

▣ 검토

- 비록 범죄발생 건수가 많지 않지만 범죄로 인한 사회·문화적 피해가 막대하고, 국민적 관심도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필요
-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함

7) 산림방화 - 일부 포함

▣ 관련 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보호법위반, 특가법위반(산림)²⁾

▣ 포함하자는 견해

- 산림방화는 방화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사회적 위험성도 매우 높음
- 법정형이 매우 높아 양형의 편차가 발생할 여지 있음

▣ 제외하자는 견해

2) 원래 산림방화의 경우에는 ‘구 산림법’이 적용되었는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6. 8. 5. 시행되면서 ‘구 산림법’이 폐지되었고, 2010. 3. 10. ‘산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산림 방화에 관한 규정이 현재와 같이 나누어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림보호법 상의 법정형(7년 이상)과 특가법상의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이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특가법상의 법정형을 개정 없이 그대로 둬으로써 생긴 문제로 보임

- 2006년 이후 실제 사례 분석 결과 이중경합범을 포함한 전체사건을 조사한 결과 산림보호법위반 6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20건, 특가법위반 7건 등 33건으로 조사되어 범죄 발생 빈도가 낮고, 대부분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행이 많아 심신미약감경을 적용한 사례가 많았음

- 사건 발생 빈도수가 낮아 경험적 방법에 의한 양형기준 설정 곤란

▣ 검토 - 타인 소유 산림방화에 한하여 포함

- 비록 사건 발생 빈도는 높지 않으나 산림방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도도 매우 높으며, 통상 피해규모도 매우 큰 경우가 많아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 높음
- 절도범죄의 경우에도 문화재절도, 임산물절도 등 사회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의 경우에는 비록 범죄 발생빈도수는 낮으나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라는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한 점을 고려할 때, 설정 대상에 포함 필요
-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소유 산림방화, 연소죄의 경우에는 실제 발생사례가 없는 점, 일반 방화의 경우에도 자기소유 건조물 등 방화, 자기 소유 일반물건방화, 방화연소의 경우 양형기준 설정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범죄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타인 소유 산림방화죄에 한하여 양형기준 설정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 자기소유 산림방화, 연소 등 - 제외

- 2006년 ~ 2012년까지 범죄발생빈도 조사결과 자기소유 산림방화,

연소죄로 기소된 사건이 전혀 없었음

- 과거와 같이 화전을 일구기 위한 목적 등이 아니면 자기 소유 산림에 고의로 방화하는 경우를 거의 상정하기 어렵고, 통상 산림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경우가 많아 이를 방화하기 보다는 무단 벌채·벌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향후에도 범죄 발생 가능성이 희박함
- 실화, 미수범의 경우에도 범정형이 낮고, 다른 범죄와의 균형,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제외함이 상당함

8) 그 밖의 방화범죄 - 제외

- ▣ 자기소유 건조물 등 방화,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 방화연소, 진화방해 - 제외
 - 최근 6년간 사건발생빈도 조사결과 자기소유 건조물 등 방화죄의 경우는 18건,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의 경우 11건, 방화연소죄는 5건에 불과하고, 진화방해죄는 전혀 없음
 - 사건발생빈도가 매우 낮고, 양형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거의 없음
 -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
- ▣ 폭발성물건과열, 폭발성물건과열치사상, 가스 등 방출·유출·살포, 가스등방출·유출·살포치사상, 가스 등 공급·사용방해, 공공용 가스 등 공급·사용방해, 가스 등 공급·사용방해치사상, 공공용 가스 등 공급·사용방해치사상, 과실폭발성물건과열등, 업무상과실·중과실폭발성물건과열 등 - 제외
 - 발생빈도가 높지 않아 경험적 방법에 의한 양형기준 설정 곤란
 - 통상의 방화범죄와는 범죄의 성격이 상이하고,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지 않음

▣ 각종 미수범, 예비·음모 - 제외

- 다른 범죄군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

III. 유형분류

1. 유형분류의 원칙

- 유사한 속성을 가지거나 유사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 내에 포섭하여 양형기준을 마련함이 타당
- 개별 범죄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해당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유형분류는 단순화할 필요
- 유형별로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들이 공통될 필요

2. 대유형분류 방안

가. 제1안 - 방화의 객체에 따른 분류

▣ 내용

- 형법상 방화죄의 구성요건과 같이 방화의 객체를 기준으로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일반건조물 등 방화, 일반물건 방화

▣ 장점

- 방화범죄를 규정하는 법률체계와 일치함
- 양형기준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해당 유형을 쉽게 찾을 수 있음
- 행위 유형에 따른 공통적인 양형인자 추출이 용이

▣ 단점

-
- 방화의 결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방화의 대상을 기준으로 한 유형분류만으로는 포섭이 불가능

나. 제2안 - 범행 동기나 피해규모에 따른 분류

■ 내용

- 살인범죄와 같이 방화의 동기를 구분하여 유형을 나누거나 방화로 인한 재산상 피해 규모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는 방안

■ 장점

- 방화범의 경우 그 보호법익의 특성상 공공의 안전과 관련하여 사회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단지 일시적으로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흥분을 참지 못하고 방화를 저지르는 경우 등과 같이 행위불법의 정도 차이를 양형기준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음
- 방화로 인한 피해의 규모에 따라 유형을 구분함으로써 인하여 피해자의 피해감정에 맞는 양형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 단점

- 방화범죄의 양형과정에 범행동기나 피해규모가 매우 중요한 양형의 요소인 것은 맞으나 모든 방화범죄에 일관된 양형인자로 보기는 어렵고, 다른 양형 인자와 크게 차별을 둘 정도는 아님
- 살인범죄는 사망이라는 피해결과가 동일하므로 범행동기를 유형분류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나 방화범죄의 경우에는 범행의 결과가 천차만별이고, 방화범죄는 횡령·배임, 사기 등 재산범죄가 아닌 공공의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인 점에 비추어 단순히 피해규모만을 가지고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님

다. 제3안 - 결과적 가중범 유무에 따른 분류

■ 내용

-
- 방화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일반적 방화죄와 방화치사상죄로 구분

▣ 장점

- 방화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와 그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구분함으로써 상이한 피해 결과를 유형분류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음

▣ 단점

- 방화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방화의 객체에 따른 구성요건이나 법정형의 큰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유형분류에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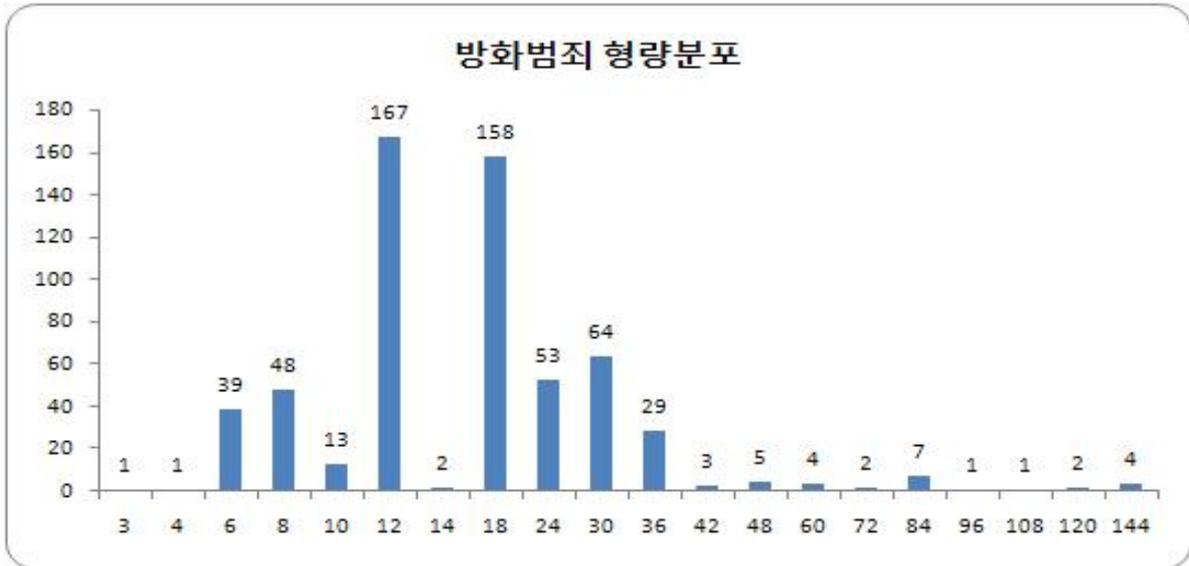
라. 검토 - 대유형은 제3안(결과적 가중범 유무), 소유형은 제1안(방화의 객체에 따른 분류)

- 방화로 인하여 단순히 재산상 손해 발생에 그친 경우와 그로 인하여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경우는 결과불법의 차이가 크고, 법정형도 크게 차이가 나므로 이를 대유형 분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 성범죄, 강도범죄, 약취·유인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등 대부분 결과적 가중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범죄군에 있어서 공통된 유형분류 기준임
- 소유형은 형법상 구성요건 및 법정형의 차이를 고려하여 방화의 객체를 기준으로 구분함이 타당함
- 다만, 문화재방화, 산림방화는 일반 형법상 방화에 비하여 특수성이 있으므로 절도범죄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별도의 대유형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형량범위 설정

3. 방화범죄 형량 분포

단위 : 명, %

세부죄명		형량(월)										
		3	4	6	8	10	12	14	18	24	30	36
일반건조물방화	수	0	0	3	4	1	64	1	16	5	4	0
	비율	0.0	0.0	3.1	4.1	1.0	65.3	1.0	16.3	5.1	4.1	0.0
일반물건방화	수	1	1	35	40	6	21	0	3	0	1	0
	비율	0.9	0.9	32.1	36.7	5.5	19.3	0.0	2.8	0.0	0.9	0.0
일반자동차방화	수	0	0	0	4	1	58	1	8	4	1	2
	비율	0.0	0.0	0.0	5.0	1.3	72.5	1.3	10.0	5.0	1.3	2.5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	수	0	0	0	0	0	0	0	0	0	0	2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2.5
현주건조물등방화치상	수	0	0	0	0	0	0	0	13	4	57	18
	비율	0.0	0.0	0.0	0.0	0.0	0.0	0.0	12.6	3.9	55.3	17.5
현주건조물방화	수	0	0	1	0	5	24	0	118	40	1	7
	비율	0.0	0.0	0.5	0.0	2.5	12.1	0.0	59.6	20.2	0.5	3.5
전체	수	1	1	39	48	13	167	2	158	53	64	29
	비율	0.2	0.2	6.5	7.9	2.2	27.6	0.3	26.2	8.8	10.6	4.8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42	48	60	72	84	96	108	120	144		
일반건조물방화	수	0	0	0	0	0	0	0	0	0	98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일반물건방화	수	0	1	0	0	0	0	0	0	0	109	
	비율	0.0	0.9	0.0	0.0	0.0	0.0	0.0	0.0	0.0	100.0	
일반자동차방화	수	0	1	0	0	0	0	0	0	0	80	
	비율	0.0	1.3	0.0	0.0	0.0	0.0	0.0	0.0	0.0	100.0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	수	1	1	0	1	3	1	1	2	4	16	
	비율	6.3	6.3	0.0	6.3	18.8	6.3	6.3	12.5	25.0	100.0	
현주건조물등방화치상	수	1	2	4	0	4	0	0	0	0	103	
	비율	1.0	1.9	3.9	0.0	3.9	0.0	0.0	0.0	0.0	100.0	
현주건조물방화	수	1	0	0	1	0	0	0	0	0	198	
	비율	0.5	0.0	0.0	0.5	0.0	0.0	0.0	0.0	0.0	100.0	
전체	수	3	5	4	2	7	1	1	2	4	604	
	비율	0.5	0.8	0.7	0.3	1.2	0.2	0.2	0.3	0.7	100.0	



4. 구체적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가. 유형분류의 기준

▣ 대유형 분류

- 결과적 가중범 유무를 기준으로 “일반적 기준”과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로 나눔
- 문화재방화, 산림방화는 일반 형법상 방화에 비하여 특수성이 있으므로 별도의 대유형으로 구분함

▣ 소유형 분류

- “일반적 기준”은 방화의 객체 및 범정형 체계에 따라서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일반건조물 등 방화”, “일반물건방화”로 소유형을 나눔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유형은 그 결과에 따라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과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사”로 소유형을 나눔

- 문화재방화, 산림방화는 절도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로 별도 대유형으로 구분

나.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1년6월-3년	2년-5년	4년-7년
2	일반건조물 등 방화	1년-2년	1년6월-3년	2년6월-5년
3	일반물건방화	6월-1년	10월-2년	1년6월-4년

- 앞서 운영지원단에서 작성한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각 유형별 형량분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현주건조물 등 방화

	6월	10월	12월	18월	24월	30월	36월	42월	72월	합계
건수	1	5	24	118	40	1	7	1	1	198
비율	0.5%	2.5%	12.1%	59.6%	20.3%	0.5%	3.5%	0.5%	0.5%	100

○ 일반건조물 등 방화

	6월	8월	10월	12월	14월	18월	24월	30월	36월	48월	합계
건수	3	8	2	122	2	24	9	5	2	1	178
비율	1.7%	4.5%	1.1%	68.5%	1.1%	13.5%	5.1%	2.8%	1.1%	0.6%	100

○ 일반물건방화

	3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18월	30월	48월	합계
건수	1	1	<u>35</u>	<u>40</u>	6	21	3	1	1	109
비율	0.9%	0.9%	<u>32.1%</u>	<u>36.7%</u>	5.5%	19.3%	2.8%	0.9%	0.9%	100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유형

-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의 경우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임에도 전 체 사건의 약 80%의 이상이 징역 1년6월 ~ 2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음
- 실무상 방화죄의 대부분이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피해규모도 크 지 않은 경우가 많은 점이 고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양형인자를 고려하면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파 악됨 ⇒ 감경영역의 권고 형량범위를 징역 1년6월 ~ 3년으로 설정 함
- 기본영역은 법정형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권고형량범위를 징 역 2년 ~ 5년으로 설정함
- 가중영역은 기본영역의 형량범위를 고려하고, 실무상 선고된 최고 형인 징역 6년을 참고하여 규범적으로 약간 상향하여 권고 형량범 위를 징역 4년 ~ 7년으로 설정함

■ 공용건조물 등 방화 유형

- 가능한 견해
 -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와 권고형량범위를 동일하게 설정하자는 의견
: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와 법정형이 같고, 그 선고형의 분포도

유사하므로, 하나의 소유형으로 통합하여 권고형량범위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

-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보다 권고형량범위를 낮추자는 의견

: 건물에 사람이 없어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로 의율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로 의율될 것이어서,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에 비해 공공에 대한 위험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를 낮추는 것이 상당하다는 견해

● 개별 사건 검토

순번	사건번호	선고형량	내용	감경	가중
1	김천 11고합6	1년 6월	공원 화장실의 문이 잠겨져 있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u>공원관리사무실</u> 에 방화(수리비 80만 원)	피해 경미. 우발적. 전과. 반성	누범.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없음
2	안동 09고합50	선고유예 (1년)	별다른 이유 없이 공용건조물인 <u>영주국도관리사무소 건물</u> 에 방화(수리비 4,192,000 원)	심신미약. 우발적. 피해회복. 합의. 초범. 반성	
3	의성 09고합9	1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소식을 듣고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수용 중인 교도소 내 방에서 불을 놓아 공용건조물인 <u>교도소 출입문</u> 쪽 벽면을 일부 소훼	반성. 불안장애. 피해경미	
4	진주 06고합15	1년 6월/2년	공중화장실을 소각하면 민족정기가 살아나 곧 통일이 될 것으로 믿은 나머지 공익건조물인 <u>공중화장실</u> 에 방화(피해액 66,805,000원)	초범. 반성	
5	충주 10고합54	1년 6월 /3년	의용소방대 대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대신에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온 것에 화가나서 공익건조물인 <u>학교 체육관</u> 에 방화(수리비 약 3억)	반성. 공탁. 자수.	계획적. 피해가 큼.
6	서울서부09 고합244	1년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여 공익건조물인 <u>근린공원 내 정자</u> 를 방화	반성. 우발적	누범
7	서울서부 07고합80	2년	사회에 불만을 품고 공원 내 <u>공중화장실</u> 을 방화	우발적. 피해경미.	누범. 동종전과.

- 검토

- 실제 사례를 보면, 방화범행 당시 건물 내에 사람이 있었던 경우에도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로 의율되는 예가 적지 않음
-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를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의 형량범위보다 낮추는 경우에는 기소되는 죄명에 따라 형량범위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개별사건에서의 위험성의 차이는 양형인자로 조정하면 충분할 것이므로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와 하나의 소유형으로 묶어 동일 형량범위를 권고함이 타당함

- 일반건조물 등 방화 유형

-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의 경우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징역임에도 징역 1년이 선고되는 사건이 전체 사건의 약 70%에 달할 정도로 많음
- 대부분의 방화범죄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이고, 범행 경위에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많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기본영역은 법정형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6월 ~ 3년으로 하고, 감경영역은 징역 1년 ~ 2년, 가중영역은 징역 2년6월 ~ 4년으로 설정함

- 일반물건방화

- 일반물건방화의 경우에도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임에도 실무상 징역 6월 ~ 1년 사이에 선고되는 사건의 비율이 약 93%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음
- 대부분의 방화범죄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이고, 범행 경위에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다.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문화재 방화	2년6월-4년	3년-8년	6년-12년
2	산림 방화	3년-6년	5년-9년	8년-13년

■ 문화재 방화

- 문화재 방화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참고할 만한 처벌례가 거의 없음
- 법정형이 공용건조물등방화죄 법정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용건조물등방화죄의 권고 형량범위(안)와 다른 방화사건의 권고형량범위(안)를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 산림 방화

- 산림 방화를 저지르는 피고인은 대부분 정신이상자 등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이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데도 이러한 범죄의 특성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음
- 최근 6년간 선고된 타인 소유 산림방화 사건에 관한 선고형 분포는 아래와 같음

	2년	2년 6월	3년	3년 6월	4년	10년	합계
건수	7	7	2	4	1	1	22
비율	31.8%	31.8%	9.0%	18.2%	4.6%	4.6%	100

※ 선고형 분포 대상사건은 단일범, 동종경합범, 이종경합범 중 음주·무면허운전과의 경합범을 대상으로 한 것임

라.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

1) 범죄의 성격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죄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때에도 성립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함(통설, 판례)

2) 죄수 관계

-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음(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³⁾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그 전단이 규정하는 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 규정으로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

3) 위 판례의 사안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인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3년 이상의 징역)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3년 이상의 징역)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함(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p>구 형법(1995. 12. 29. 개정 전)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의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u>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u></p> <p>현행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u>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u></p>
--

-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죄수 관계는 다음과 같음

구분	방화	살인	죄수 관계
죄명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
법정형	사형, 무기, 7년↑	사형, 무기, 5년↑	
죄명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
법정형	사형, 무기, 7년↑	사형, 무기, 7년↑ 자격정지 병과 가능 (형법 제265조)	

- 결국,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 등에 방화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형법상의 살인죄는 성립하지 아니함. 다만 존속을 살해할 목적

으로 현주건조물 등에 방화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현주건조물등 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함

- 또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 등에 방화를 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형법상 상해죄(제257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해, 집단·흥기 등 상해)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함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죄의 법정형이 더 높음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2년6월-5년	4년-7년	6년-11년
2				

-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와 과실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구별할지 여부
 - 통상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 등에 방화를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과실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죄와 형량의 차이를 두어야 할 정도의 불법의 차등을 둘 근거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죄와 과실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죄의 유형을 구분할 근거나 실효성 없음
- 앞서 운영지원단에서 작성한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각 유형별 형량분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18월	24월	30월	36월	42월	48월	60월	84월	합계
건수	13	4	57	18	1	2	4	4	103
비율	12.6%	3.9%	55.3%	17.5%	1.0%	1.9%	3.9%	3.9%	100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죄에 대한 기존 선고형량은 징역 2년6월 ~ 3년에 약 73%가 분포하고 있고, 특히 징역 2년6월 분포비율이 절반을 상회하고 있음
- 하지만 대부분 사건들은 대부분 정상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사건이 많아서 감경영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 기존 선고형량에 대한 통계분석결과와 법정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영역은 징역 4년 ~ 7년으로 하고, 감경영역은 징역 2년6월 ~ 5년으로 설정하고, 가중영역은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도 있으므로 6년 ~ 11년으로 설정함

4)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1)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와 ‘과실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소유형으로 구분할지 여부

(가) 문제점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의 경우,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와 과실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가 불법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특히 살인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범행동기를 기준으로 5단계로 구분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를 과실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와 구분하여 소유형을 나눈 후 양형기준을 설정할지 여부가 문제됨

(나) 가능한 방안

■ 제1안 - 방화범죄 양형기준에는 과실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만 규정, 살인의 고의가 있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는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규정하는 방안

● 논거

- 살인의 고의가 있는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죄는 살인죄의 성격이 강하므로 살인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여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추가하는 것이 상당함

● 문제점

- 살인범죄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임에 비하여,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므로 그 성격이 상이하어 같은 범죄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제2안 - 모든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를 방화범죄 양형기준에 규정, 다만 살인의 고의가 있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는 살인범죄 양형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는 방안

● 논거

- 살인의 고의가 있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도 본질적으로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므로 방화범죄 양형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함
- 다만, 살인의 고의가 있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는 범행의 결과의 측면에서 살인범죄와 흡사하고 대부분의 양형인자도 살인범죄와 중복되므로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없고, 살인범죄 양형

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충분함

● 문제점

- 양형기준의 실제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양형기준을 준용한다고만 표시할 경우 양형기준의 적용에 혼란을 겪게 될 소지가 있음
- 살인범죄의 양형인자와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의 양형인자가 완전히 일치한다고는 보기 어려움

▣ 제3안 - 모든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를 방화범죄 양형기준에 규정, 과실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살인의 고의가 있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를 하나의 소유형으로 구분하는 방안

● 논거

- 원칙적으로 제2안에 의하되, 제2안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에 관한 권고형량범위를 설정함
- 실무상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에 있어서는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사안과 과실로 인한 사안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음
- 실제 선고된 사건들을 분석해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와 과실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소유형으로 구분할 정도의 형량의 차등을 두고 있지도 않음
- 따라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와 과실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포괄하여 하나의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함

● 문제점

- 살인의 고의가 있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와 과실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 사이에는 결과 불법은 동일하더라도 행위불법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소유형으로 분류할 경우 권고 형량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 존재

■ 제4안 - 살인의 고의가 있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와 과실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를 별도의 소유형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방안

● 논거

- 살인의 고의가 있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와 과실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 사이에는 결과 불법은 동일하더라도 행위불법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의 소유형으로 구분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함
- 살인의 고의가 있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는 결과에 있어서는 살인범죄와 유사하므로 살인범죄 양형기준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별도의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 있음

● 문제점

- 과실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의 구분과 같이 양자간의 구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가 적지 않음
- 방화범죄의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우려

● 구체적 소유형 분류 방안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1안 : 살인의 고의가 있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의 양형테이블을 하나로 만드는 방안▶ 제4-2안 : 살인의 고의가 있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의 양형테이블을 살인범죄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범행의 동기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의 양형테이블을 만드는 방안. 예컨대, 살인범죄의 제2, 3, 5유형을 준용하여 3개의 소유형으로 구분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
|--|

설정하는 방안

(다) 구체적 사건 분석

■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순번	사건번호	선고형량	내용	감경	가중	비고
1	고양 06-146	12년	동거남인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u>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u>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에 창문을 통해 등유를 흘려보낸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거용 컨테이너 1동 소훼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화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		잔혹한 방법	보통 동기 (가정 불화)
2	인천 07-573	1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유소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수익금 배분을 하지 않자, 마지막으로 수익금 배분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u>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u> ,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13회가량 찌르고,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피해자와 사무실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유소를 소훼하고, 피해자를 질식으로 사망하게 함		계획적, 위험한 방법, 범행장소 (주유소)	보통 동기 (채권 채무)
3	부산동부 06-100	12년	배우자인 피해자가 잦은 외박과 외도에 불만을 품던 중, 외도의 흔적이 있는 피해자를 추궁하였으나 <u>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자 화가 나 살해하기로 마음먹고</u> , 피해자에게 두부손상을 가한 후 안방 등에 세녹스를 뿌리고 불을 붙여 아파트 내부 소훼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흡입화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우발적 (피해자 유발)	범행부인, 범행은폐	보통 동기 (가정 불화)
4	대전 06-141	9년	피해자와 이혼에 따른 재산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피해자가 재결합도 응하지 않자, <u>피해자를 안방에 끌고 간 후 시너를 안방에 뿌린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u> 거주지 안방을 소훼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심신미약 (술), 합의	잔인한 범행수법	<u>과실로 볼 수도 있음</u> , 보통 동기 (가정 불화)
5	인천 09-240	7년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남자 문제를 추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사과하지 않으면 불을 지르기로	우발, 피고인 화상	잔인한 범행수법	<u>과실로 볼 수도 있음</u> ,

			마음먹고, 휘발유를 사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u>이불과 피해자의 몸에 뿌렸음</u> 에도,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자 일회용ライター로 불을 붙여 하나 빌라 102호 전체를 소훼하고, 피해자가 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보통 동기 (가정 불화)
6	인천 07-337	4년	동거녀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살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u>피해자와 거실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u> ライター에 불을 붙여 303호 전체 소훼하고, 피해자가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우발, 피고인 화상	잔인한 범행수법	<u>과실로 볼 수도</u> 있음, 보통 동기 (가정 불화)

■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순번	사건번호	선고형량	내용	감경	가중	비고
1	대구 06-491	12년	피해자가 동거녀인 피해자와 전날 말다툼을 하고 화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귀가한 후, <u>피해자가 '왜 들어왔냐'며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면서 계속 잔소리를 하자 격분하여, 신나를 거실바닥에 뿌린 다음</u> ライター로 불을 붙여 아파트 전체를 소훼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매연 흡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우발적, 구호노력		살해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2	의정부 06-42	10년	유흥주점 동료인 피해자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아 <u>숙소에 불을 놓아 놀라게 함으로써 혼내 줄 목적으로, 숙소 내 건조장소에서 가스라이터로 이불에 점화하여 건물 4층 전체를 소훼</u> 하고, 피해자 2명이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사소한 동기, 다수인 현존	
3	광주 06-305	10년	아버지인 피해자와 형과 집안문제로 의견충돌이 있어 불만이 있던 중, 이야기를 위해 형이 자고 있던 작은 방의 문을 두드렸으나 나오지 않자 <u>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거실에 이불 등을 가져다 놓은 다음</u> 일회용ライター로 불을 붙여 집 전체를 소훼하고, 방에 있던 피해자를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4	서울 중앙 09-840	8년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배신감에 화를 참지 못하고, 신나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반성	다수인 현존, 계획적	살해 고의가 있다고

			들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가서, 손님을 내 보낸 후 신나를 바닥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의 주점 전체에 번지게 하여 주점 내부 전부를 태우고, 피해자를 전신화상 및 뇌사상태에 빠트림			볼 수 있음
5	대전 07-74	7년	동거 중인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 일로 불만을 품다가 재차 같은 일이 발생하자 격분하여, 부탄가스통 3개를 구멍내고 라이터로 가스에 점화하여 거주하고 있던 여관방 등 소훼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우발, 반성		살해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6	광주 09-115	7년	자신이 보증을 서는 바람에 가게가 어려워진 일로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하며 피한다는 이유로, 방안에 오일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 전체를 소훼하고, 방안에 있던 피해자(어머니)로 하여금 화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존속, 가족들이 사는 집 방화	
7	춘천 07-125	6년	처형인 피해자와 함께 술에 만취하여 늦게 들어온 배우자를 나무라자, 배우자가 컵을 집어던지며 화를 내었다는 이유로, 등유 통을 던져 거실바닥에 등유가 흐르게 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집 전체를 소훼하고,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우발		
8	논산 10-1	5년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방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거지 전체 소훼하고, 부친인 피해자를 화상으로 인한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심신미약 (정신분열)	존속	
9	북부 05-362	4년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는다는 환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일회용 라이터로 방안에 있던 소금 포대에 불을 붙여 고시원 5층 25개 전체 소훼하고, 다른 방에 거주하던 피해자가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심신미약 (알코올중독, 환각증세)	다수인 현존	
10	포항 06-110	3년6월	부인인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하는 등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메시지를 피해자가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시너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에 뿌린 후	우발, 피고인 화상	잔혹한 범행 수법	

			같이 죽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고 하자, 공기 중에 라이터를 켜 불길에 침대에 옮겨붙게 하여 아파트 방 일부를 소훼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화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11	북부 07-88	3년	피해자(남편)와 전남편의 자식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고지서 등 종이류를 아무 데나 버려둔다는 말에 화가 나, 종이류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태우던 중 불이 붙은 종이를 침대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거실과 방 소훼하고, 뇌출혈과 만취상태로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가 사망에 이침	심신미약 (정신병), 우발		
12	천안 07-31	3년/4년	배우자로부터 술에 취하여 귀가한 것에 대해 책망을 듣자 화가 나, 등유를 거실 양탄자 위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고인 집 거실 및 방을 소훼하고,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인 피해자로 하여금 화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심신미약 (술), 유족 선처		

■ 분석

-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와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음
- 대부분 사례는 살인범죄 양형기준을 기준으로 보면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되는 사례가 많음

■ 형량분포

-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⁴⁾

	3년	3.5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2년
비율			1			1(1)	(1)	1		3(1)

-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4) ()는 범의가 애매한 경우 중복하여 기재한 것임, 1(1) = 2건

	3년	3.5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2년
비율	2	1	1(1)	1	1	2(1)	1	(1)	2	1

● 분석

-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 등을 뿌려 불을 붙이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까지 포함시키면 형량은 7년 ~ 9년 사이에 분포를 함
- 명백하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대부분 12년을 선고하였음

(라)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

① 제3안에 의할 경우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2년6월-5년	4년-7년	6년-11년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4년-10년	7년-13년	10년 이상, 무기 이상

- 현주건조물등 방화치사죄에 대한 기존 선고형량은 징역 12년이 25%로 제일 높고, 다음으로 징역 7년이 18.75%로 높으나 전체적으로 징역형의 분포가 넓은 영역에 고루 분포함

	36월	42월	48월	72월	84월	96월	108월	120월	144월	합계
건수	2	1	1	1	3	1	1	2	4	16
비율	12.5%	6.25%	6.25%	6.25%	18.75%	6.25%	6.25%	12.5%	25.0%	100

- 기존 선고형량에 대한 통계분석결과와 법정형,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영역은 징역 7년 ~ 13년으로 설정하고, 살해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를 하는 유형은 중형이 선고될 사안들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되므로 징역형의 상한을 개방하고,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함께 권고함

② 제4-1안에 의할 경우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2년6월-5년	4년-7년	6년-11년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4년-10년	7년-13년	10년-17년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9년-13년	12년-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형량분포와 법정형 등을 고려하여 설정함
-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형을 고려해 ‘비난 동기 살인’에 준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함

③ 제4-2안에 의할 경우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2년6월-5년	4년-7년	6년-11년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4년-10년	7년-13년	10년-17년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9년-13년	12년-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경우)			
4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로 극단적 인명경시의 경우)	18년-23년	22년-27년	25년 이상, 무기 이상

- ☞ 제4-1안에 의할 경우에도 살인범죄 양형기준 제5유형의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과 같은 유형을 추가함
- ☞ 살인범죄 양형기준 제4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형법 제301조의2, 성폭법 제9조 제1항),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4), 강도살인(형법 제338조)으로 5)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이어서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와 위 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 ⇒ 법정형이 더 중한 위 살인범죄로 처벌되므로 별도로 방화범죄에서는 고려하지 아니함

(마)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논의 결과

- 살인의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와 과실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이에는 비난의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형량범위를 설정
- 원칙적으로 제4-1안에 의하되, 다만 살인범죄 양형기준과 비교하여 '비난 동기 살인'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에서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가 법정형이 더 높음에도 권고 형량범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보완하기로 함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2년6월-5년	4년-7년	6년-11년

5) 『2012 양형기준』, p 4.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4년-10년	7년-13년	10년-17년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9년-13년	12년-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 3유형에 해당할 경우,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한다.

IV. 양형인자

1. 양형인자의 추출 및 분류 방법

▣ 운영지원단 통계분석 결과

- 2006. 1. 1.부터 2011. 12. 31.까지 선고된 방화범죄 사건 중 약 604건 중 240건의 판결문 분석을 통하여 중요한 양형인자를 추출한 후 양형인자별로 그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고 규범적 관점에서 양형인자가 양형에 미쳐야 하는 영향력의 크기를 평가하여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자와 그렇지 않은 인자로 구분하여 전자를 특별양형인자로, 후자를 일반양형인자로 분류함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에서 작성한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계상 유의미한 양형인자를 발굴하여 양형기준에 반영함

▣ 실제 판결문 분석 결과

- 방화범죄에 관한 운영지원단의 확정사건 자료조사 대상 판결 604건(사람 수 기준) 중 240건의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양형인자를 추출함
 - 전주건조물등방화 50건, 전주건조물등방화치상 48건, 전주건조물등방화치사 18건, 일반건조물등방화 46건, 일반물건방화 48건, 일반자동차방화 30건

2. 양형인자 정리

가. 일반적 기준

1) 양형인자 예시안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범행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제3유형은 제외)
	행위 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화 기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양형인자의 정의]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의 범행 또는 부당한 대우가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조기 진화로 실제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피해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아주 작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방화로 인해 인근 건물(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 방화로 인해 피해자에게 대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경우
 -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된 경우
-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보험금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에 반대하는 입주자들의 주거나 사업장에 방화하는 등 정당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실력 행사의 일환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제4유형은 제외)
- 다세대주택, 아파트, 상가, 주유소 등의 방화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검 토

▣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자의로 진화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지 여부**

● 제1안 -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자는 의견

- 방화범죄의 성격상 조기 진화가 중요한데, 피고인이 방화 초기에 적극적으로 화재를 진화하여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독일 형법 제306조e “현저한 손실이 일어나기 전에 행위자가 자의로 화재를 진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형을 작량하여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와는 중복해서 적용이 가능함. 방화죄의 기수시기에 관해서 대법원이 독립연소설을 취하고 있어 기수가 되더라도 방화의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는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해야 함
- 피고인이 방화 후 바로 후회하고 자의로 진화하여 실제 피해가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면 타인에 의하여 진화되어 경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방화의 결과로 큰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비하여 이중 감경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 양형이 될 것임
- 방화범죄의 특성,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로 하여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행위자가 진화한 경우” 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는 것이 상당함

● 제2안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자의로 진화한 경우” 는 기존안의 일반감경인자인 “진화 기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과 특별감경인자인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 결합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됨

- “현저한 손실이 발행하기 전에 자의로 진화한 경우” 를 특별감경인자로 적용할 경우에는 다른 인자와 중복 적용 문제가 전혀 없지 아니함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는 방화범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판례, 학설이 독립연소설을 취하고 있어 기수 시점이 다른 범죄에 비하여 너무 빨라 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실제 화재로 인하여 소훼되는 양상은 천차만별임. 피고인의 노력으로 진화가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진화가 되었다고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는 결과불법의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임
- 따라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를 특별감경인자로, “진화 기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을 일반감경인자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현저한 손실이 발행하기 전에 자의로 진화한 경우” 는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함

● 검토 - 제2안(불필요설)

- 우리나라는 독일 형법과 같이 자의로 진화에 성공한 경우에 형을 감경하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독일 형법상 규정을 반드시 양형인자로 반영할 필요는 없음
- “현저한 손실이 발행하기 전에 자의로 진화한 경우” 를 별도로 양형인자로 설정하지 않더라도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를 특별감경인자로, “진화 기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을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는 이상 피고인의 진화 노력을 충분히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 일반감경인자

- 다수 판결례에서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감경요소로 삼고 있음

- 하지만 범행 후 피고인에게 발생한 우연한 사정을 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범행과정에서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연적 처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감경인자로 설정함
- 참고로 독일에서는 피고인에게 발생한 중대한 범행결과는 일반적으로 양형에서 고려되어 왔으나, 독일형법 제60조는 이에 더 나아가 이른바 “자연적 처벌” (poena naturalis) 사상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발생한 중대한 범행결과에 대한 형면제까지 인정하고 있음. 이 점에서 독일형법 제60조는 특별한 한계사례에서 적용되는 예외규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실무에서는 형법 제60조가 적용된 예가 많지는 않음. 2008년의 경우 법원은 성인형법의 영역에서 형법 제60조를 적용한 사건이 총 338건이었으며, 이 수치는 법원이 2008년 한 해 동안 피고인에게 행한 판결 중 0.04%에 해당하는 것임

독일 형법 제60조(형의 면제)

행위자에게 발생한 범죄행위의 결과가 법원의 형선고를 명백히 불필요하게 할 정도로 중한 경우에는 법원은 형을 면제한다. 단, 행위자에게 1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제60조의 취지는, 행위자가 범죄로 인하여(예: 음주운전중에 범한 사고) 스스로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행위자의 가족 등을 잃은 경우에 행위자에게 형을 선고하는 것이 명백하게 불필요한 경우에는 형선고를 면제한다는 데 있음. 이러한 사례에서는 행위자의 범행책임이 감쇄된다고 볼 수 없고, 심지어 더 중대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음. 그러나 한편으로 형벌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중대한 결과발생을 통하여 행위자의 범행책임이 일부 상쇄되었으며(poena naturalis),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 인하여 예방의 필요성도 더 이상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행위자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것임

- 당해 범죄에 대한 자유형이 1년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형면제는 항상 인정되지 않음. 법원은 형면제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 전에 가설적인 선고형량을 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범죄의 결과는 행위자에게 이미 형감경적 요소로 고려됨

▣ 내부 고발 - 제외

- 보험금 편취를 위한 방화범행을 막기 위하여 범행을 폭로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자발적 동기에 의한 후속범행 고발을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에 대해서는 뇌물범죄나 사기범죄 등 구조적 비리를 고발하는 범죄와는 달리 방화범죄의 경우 ‘자수’를 통하여 범행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므로 내부고발을 별도의 감경인자로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나.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1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범행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화 기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 특별감경인자

- 문화재보호법 제94조 각 호의 건조물이라는 인식이 없이 우연히 해당 건조물을 방화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범죄에서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⁶⁾한 것과 마찬가지로 특

별감경인자로 정함이 상당함

▣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

●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고, 소실 후에는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재산에 대한 방화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에 대한 방화
- 국립공원의 산림유전자보호구역 내 산림,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방화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6) 『2012 양형기준』, p. 153.

다.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

1) 양형인자 예시안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1유형)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유형) ○ 미필적 살인의 고의(3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후자는 1유형에 한함)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범행 ○ 다수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중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화 기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 상당 금액 공탁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양형인자의 정의]

■ 경미한 상해(제1유형)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제1유형)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제2유형)

-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 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강도치사, 약취·유인치사/인질지사, 특수공무방해치사,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 양형기준이 설정된 모든 결과적가중범에 있어서 공통적인 양형인자임

■ 잔혹한 범행수법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유족이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V. 집행유예 기준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중한 상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경미한 상해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화 기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